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2차) 공고

신청자격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소득완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 '24. 6. 28.(금)]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상동 702 일원)
위 치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부천웹툰융합센터 바로 옆 위치

공 고 요 약 안 내

■ 이 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이 공고의 청약 신청자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무주택자) 이면서 아래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19~39세 청년 (혼인여부 무관, 출생일 : 1984. 6. 29. ~ 2005. 6. 28.)

해당 종사자	세부사항
가) 문화산업종사자 :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업종이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 p.38에서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나) 등록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여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래 분야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총 8개 분야에 한함) - 문학 / 미술(응용미술 포함)·사진·건축 / 음악·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분야	
다) 부천시 추천자 :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천시에서 별도 모집 : 부천시청(www.bucheon.go.kr) → 부천소식 → 새소식[032]320-3000]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콘텐츠 및 예술 관련 학과 대학/대학원(석·박사) 재학생 - 콘텐츠 : 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예 술 : 음악,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무용, 실용예술(건축, 디자인, 공예, 패션, 미용) 등
	② 부천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 현재 수강중인 학생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 콘텐츠·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부천시립예술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③ 등록공연장 종사자 -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 현재 일하는 자
	④ 웹툰융합센터 입주기업 종사자 및 작가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콘텐츠 및 예술 관련 분야 프리랜서

2. 입주자격 완화 : 자격검증 시 소득완화(3순위 소득 150%까지 완화)

■ 소득완화 세부사항

공급대상	구 분	가구원수	1순위(기본)	2순위	3순위
지역전략산업 총사자	일반 (외벌이 부부 포함)	1인	120% 이하	140% 이하	150% 이하
		2인	110% 이하	13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12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130% 이하	14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130% 이하		

■ 소득완화 순위자 갱신계약 관련

- 2순위 입주자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 :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추가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 기준액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세전금액)					
	100%	110%	120%	130%	140%	150%
1인	3,482,964원	3,831,260원	4,179,557원	4,527,853원	4,876,150원	5,224,446원
2인	5,415,712원	5,957,283원	6,498,854원	7,040,426원	7,581,997원	8,123,568원
3인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9,358,244원	10,078,109원	10,797,974원
4인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10,723,007원	11,547,854원	12,372,701원
5인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11,407,592원	12,285,099원	13,162,607원
6인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12,432,267원	13,388,595원	14,344,923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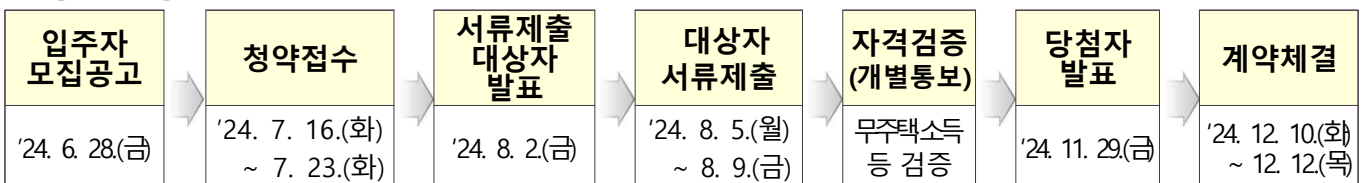
3. 총자산 합산액 : 3억 4,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4. 금회 모집호수

(단위 : 호)

구 분	총 모집호수	16A	21A	21T1/T2	26A/B	26A1/B1 (주거약자)	26T	36A/B	36T	44A/B
합 계	994	372	60	56	77	175	14	160	20	60
당첨자	454	182	30	26	37	85	4	70	-	20
예비자	540	190	30	30	40	90	10	90	20	40

5. 공급일정



6.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자격검증(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p.10 4. 신청자격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임대대상

■ 공급형별 모집현황

공급형별	건설호수	금회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고층수	발코니 확장 여부	방개수	
		계	당첨자	예비자	주거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총계	850	994	454	540									
16A	212	372	182	190	16.98	10.3484	3.8959	9.0212	40.2455	25층	확장	거실 겸 침실 1	
21A	72	60	30	30	21.56	13.1397	4.9469	11.4545	51.1011	25층	확장	"	
21T1/T2	T1	23	56	26	30	21.76	13.2616	4.9928	11.5607	51.5751	22층	비확장	"
	T2	6				21.69	13.2189	4.9766	11.5235	51.4090	19층		"
26A/B	A	77	77	37	40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25층	확장	"
	B	9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
26A1/B1 (주거약자)	A1	76	175	85	90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10층	확장	"
	B1	9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
26T	5	14	4	10	26.69	16.2662	6.1240	14.1800	63.2602	23층	비확장	"	
36A/B	A	199	160	70	90	36.61	22.3119	8.4001	19.4503	86.7723	25층	확장	거실1 침실1
	B	8				36.61	22.3119	8.4001	19.4503	86.7723	10층		"
36T	5	20	-	20	36.89	22.4826	8.4644	19.5991	87.4361	20층	비확장	"	
44A/B	A	135	60	20	40	44.58	27.1692	10.2288	23.6847	105.6627	25층	확장	거실1 침실2
	B	14				44.77	27.2850	10.2725	23.7856	106.1131	24층		"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이며,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청약 및 입주 관련】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1 ~ 2월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 6. 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자산 ·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형별 한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1T1/T2, 26A/B, 26A1/B1, 36A/B 및 44A/B는 형 구별없이 청약신청 받으며, 형 구별없이 동 · 호를 추첨합니다.
- 공고에 첨부된 팸플릿 등을 통하여 형별 평면도, 발코니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당첨자 발표일 전에 공가호수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번에 모집하는 **당첨자 및 예비자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향후 일반 행복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 선정 관련】

-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중복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시)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예비자 탈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즉, 두 단지에 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이 더 빠른 단지, 청약접수일까지 같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사라지게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국민·행복·영구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면적 관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된 빌트인 항목(주택형 무관)】

전용면적	16㎡, 21㎡	26㎡	36㎡, 44㎡
빌트인 항목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2구형) - 냉장고 - 냉장고장 - 책상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2구형)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3구형)

-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없어,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세대 내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주택(26A1, 26B1)】 - 주거약자이면서 지역전략산업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상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미끄럼방지 마감재, 2) 동체감지기, 3) 바닥단차 완화(3cm 이하), 4)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욕조)
5) 욕실통로센서등, 6) 높낮이 조절 샤워기, 7) 욕조 높이 조절(45cm 이하), 8)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은 제공대상에 따라 신청가능한 설치항목이 다르며, 공사현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공대상 및 설치항목 등은 p.27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범위(발췌)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형	기본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D]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상한 및 하한금액)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증액 : E=A+D 감액 : E=A-D]	월임대료
	계 [A]	계약금(5%) [B=Ax5%]	잔금(95%) [C=Ax95%]					
16A	34,920,000	1,746,000	33,174,000	147,240	+	14,000,000	48,920,000	65,570
					-	29,000,000	5,920,000	231,820
21A	46,440,000	2,322,000	44,118,000	195,820	+	20,000,000	66,440,000	79,150
					-	39,000,000	7,440,000	309,570
21T1/T2	44,640,000	2,232,000	42,408,000	188,230	+	19,000,000	63,640,000	77,390
					-	37,000,000	7,640,000	296,140
26A/B	57,960,000	2,898,000	55,062,000	244,390	+	25,000,000	82,960,000	98,550
					-	48,000,000	9,960,000	384,390
26A1/B1 (주거약자)	57,960,000	2,898,000	55,062,000	244,390	+	25,000,000	82,960,000	98,550
					-	48,000,000	9,960,000	384,390
26T	54,000,000	2,700,000	51,300,000	227,700	+	23,000,000	77,000,000	93,530
					-	45,000,000	9,000,000	358,950
36A/B	77,040,000	3,852,000	73,188,000	324,850	+	33,000,000	110,040,000	132,350
					-	64,000,000	13,040,000	511,510
36T	73,080,000	3,654,000	69,426,000	308,150	+	31,000,000	104,080,000	127,310
					-	61,000,000	12,080,000	486,060
44A/B	92,160,000	4,608,000	87,552,000	388,600	+	39,000,000	131,160,000	161,100
					-	77,000,000	15,160,000	613,180

- 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금 제도】

- 전환보증금[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16A형의 경우 : 기본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34,920,000원, 기본 월임대료 147,240원에서

- (증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14,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임대보증금을 48,920,000원까지 높이면 월임대료는 65,570원으로 내려갑니다.
- (감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29,000,000원만큼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5,920,000원까지 낮추면 월임대료는 231,820원으로 올라갑니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청약신청 (인터넷,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모바일 포함) 청약신청 기간 '24. 7. 16.(화) 10:00 ~ 7. 23.(화) 17:00 ■ 방문청약 신청일 '24. 7. 16.(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가능 • 방문 청약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오리역 1번출구)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4. 8. 2.(금)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		
심사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24. 8. 5.(월) ~ 8. 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영상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4. 8. 9.(금)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24. 11. 29.(금)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확인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첨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 ARS : 1661-7700
↓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약(모바일 계약 포함) '24. 12. 10.(화) 10:00 ~ 12. 12.(목) 17:00 ■ 방문계약 '24. 12. 10.(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약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방문계약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청약신청은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이름 : LH 청약플러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내에는 청약 신청내용의 변경 · 수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을 위해 송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회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는 '24. 6. 28.(금) 부천시에서 별도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부천시청 사이트 (www.bucheon.go.kr) 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 내 부천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부천시청 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32)320-3000

신청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님께서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LH 경기남부지역본부)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PC 또는 모바일)

■ PC

■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② LH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인증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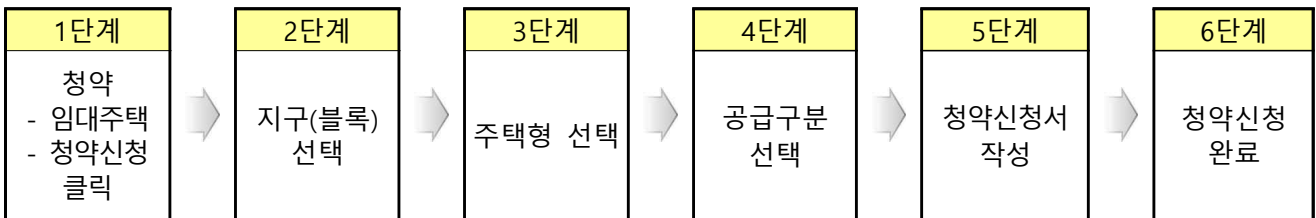
-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시는 고객께서는 청약신청 전까지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LH 청약플러스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경로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하기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청약신청



■ 기타사항

- 고객님께서 청약신청하실 때 사용할 PC에서 실제 인터넷 청약신청하기 1 ~ 2일 전에 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고객님께서 청약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완료 후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은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청약신청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또는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③ 인증서 로그인

④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PC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기타사항

- 모바일 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모바일 청약이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이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 간 청약신청의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PC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모바일로 수정·취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PC로 수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사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LH 청약플러스' 어플로 당첨자 확인 및 계약내역 조회, 잔금 납부내역 조회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 청약신청

- PC 또는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미지참 시 청약신청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세부안내

일 자	'24. 7. 16.(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교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주차 가능합니다.) • 지하철 :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 스 : 오리역 정류장에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필요서류	<p>□ 아래 서류와 p.17 ~ p.19의 '6. 심사서류 제출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이란 청약신청자를 의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배우자일 경우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이 배우자 외의 사람인 경우(예비 배우자 포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② (자필서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4. 신청자격

4-1. 자격검증 대상

- 신청자의 혼인여부에 따른 자격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신청자의 혼인여부	검증사항 및 대상	
	주택소유	세대원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혼인중이 아닌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혼인중인 경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 부모·조부모가 신청자와 함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조부모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4-2. 공통자격'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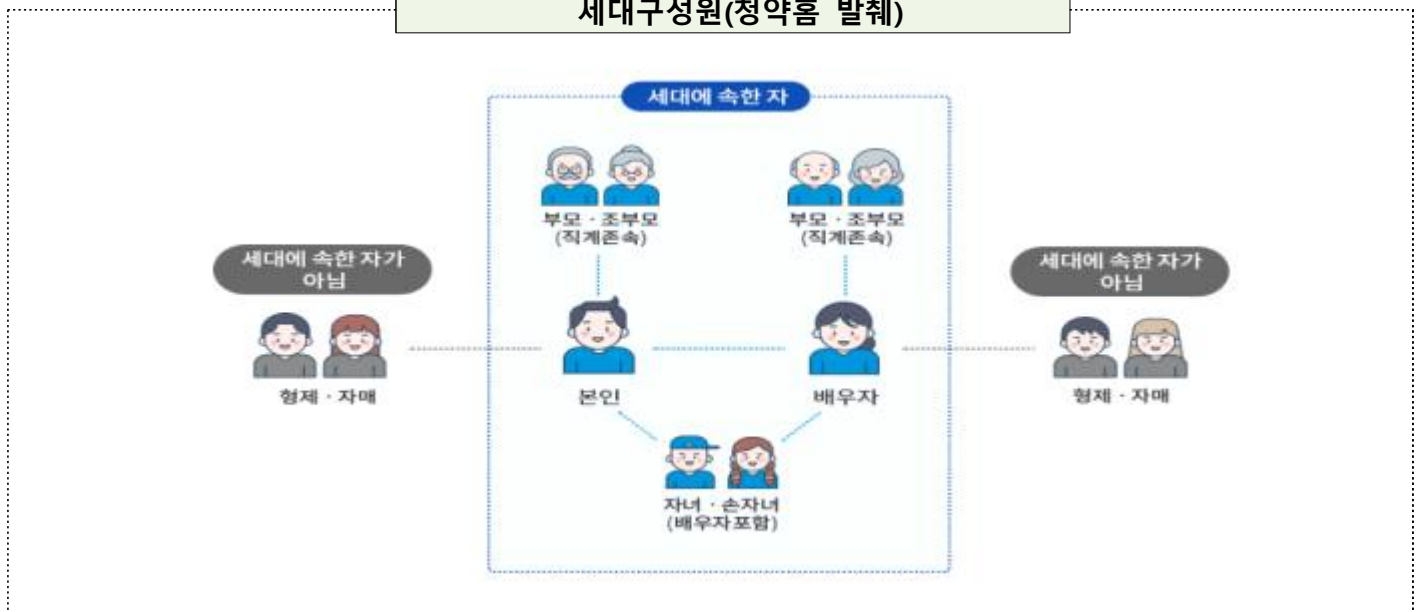
4-2. 공통자격

【세대구성원 관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구성원(청약홈 발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소유 관련】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를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29 「12.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사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향후 갱신계약이 거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1) 신청요건, 2) 소득·자산·청약저축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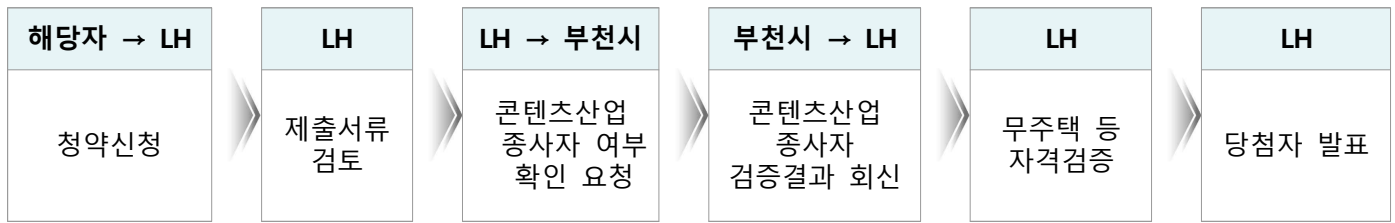
-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이 아래 문화산업종사자, 등록예술인 또는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혼인여부 무관, 출생일 : 1984. 6. 29. ~ 2005. 6. 28.)
* 다만, 혼인여부에 따라 자격검증 대상의 범위가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사자	세부사항
가) 문화산업종사자 :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업종이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 p.38에서 분류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나) 등록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여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아래 분야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총 8개 분야에 한함) - 문학 / 미술(응용미술 포함)·사진·건축 / 음악·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분야	
다) 부천시 추천자 :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천시에서 별도 모집 : 부천시청(www.bucheon.go.kr) → 부천소식 → 새소식 [032)320-3000]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콘텐츠 및 예술 관련 학과 대학/대학원(석·박사) 재학생 - 콘텐츠 : 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예술 : 음악,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무용, 실용예술(건축, 디자인, 공예, 패션, 미용) 등
	② 부천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 현재 수강중인 학생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 콘텐츠·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부천시립예술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③ 등록공연장 종사자 -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 현재 일하는 자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④ 웹툰융합센터 입주기업 종사자 및 작가 콘텐츠 및 예술 관련 분야 프리랜서

【문화산업종사자 중 콘텐츠산업 종사자 해당여부 확인 관련】

- 문화산업종사자 중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LH에 청약신청을 하고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천시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 032)320-3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절차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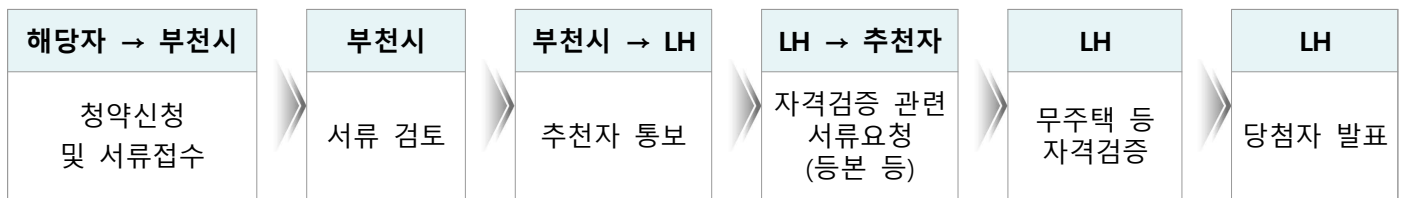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는 '24. 6. 28.(금) 부천시가 별도 공고하여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부천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홈페이지 : www.bucheon.go.kr

- 부천시 문의처 : ☎ 032) 320-3000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로 신청하신 분도 무주택·소득·자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 절차



* p.38 「16.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참조

【문화산업종사자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종사자 및 등록예술인 관련】

- 전문예술법인·단체종사자 및 등록예술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청약접수 및 서류 검토, 자격검증 모두 LH공사가 진행합니다.

【자격검증 기관】

구 분	해당 종사자	자격별 검증기관	
		종사자 여부	주택소유·소득·자산·자동차 등
문화산업종사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부천시 문화산업과	LH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LH	
등록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LH	
부천시 추천자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부천시 문화산업과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 소득·자산 및 청약저축 가입 관련 기준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상한금액 최대 150%까지 완화

구분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선					
		1순위(일반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완화조건)	
일반	1인	4,179,557원 이하	120%	4,876,150원 이하	140%	5,224,446원 이하	150%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7,040,426원 이하	130%	7,581,997원 이하	140%	8,123,568원 이하	150%
	3인	8,638,379원 이하	120%	9,358,244원 이하	130%	10,797,974원 이하	
	4인	9,898,160원 이하	120%	10,723,007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	10,530,085원 이하	120%	11,407,592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	11,475,938원 이하	120%	12,432,267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 소득한도액은 6인가구 소득금액 기준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당 추가금액		
	1순위(일반)	2순위(완화)	3순위(완화)
일반	+788,211원	+945,853원	+1,182,317원
맞벌이 부부	+945,853원	+1,024,674원	+1,182,317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은 3억 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전까지 가입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소득·자산 및 자동차 등 자격 검증 관련】

-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등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유무를 판단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 해당 자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약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부채(금융부채 제외)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4. 6. 28.(금))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증명 관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이면서 주거약자 - 26A1 /B1 주택형 신청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4-3.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거약자(장애인 등)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제공대상에 따라 신청가능한 설치항목이 다르며, 공사현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공대상 및 설치항목 등은 p.27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상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1) 미끄럼방지 마감재, 2) 동체감지기, 3) 바닥단차 완화(3cm 이하), 4)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욕조)
- 5) 욕실통로센서등, 6) 높낮이 조절 샤워기, 7) 욕조 높이 조절(45cm 이하), 8)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주거약자' 범위 (발체)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거

- 이 주택은 19~39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으로, 「관련법령」 상의 주거약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는 위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입주자 선정 시 반영합니다.)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p.34 '15. 장애인의 장애정도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24. 6. 28.(금))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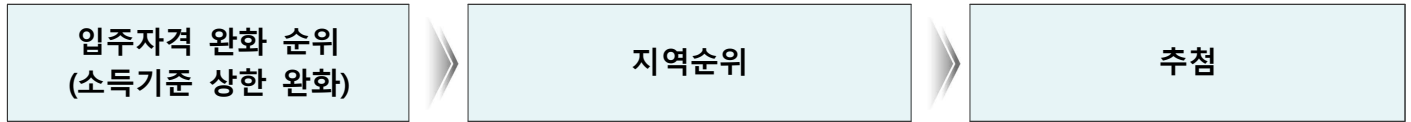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 위 배점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하며,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입주자격 완화 순위 → ② 지역 순위 → ③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서열** → ④ 추첨 (자세한 선정방법은 p.16의 '5.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시에도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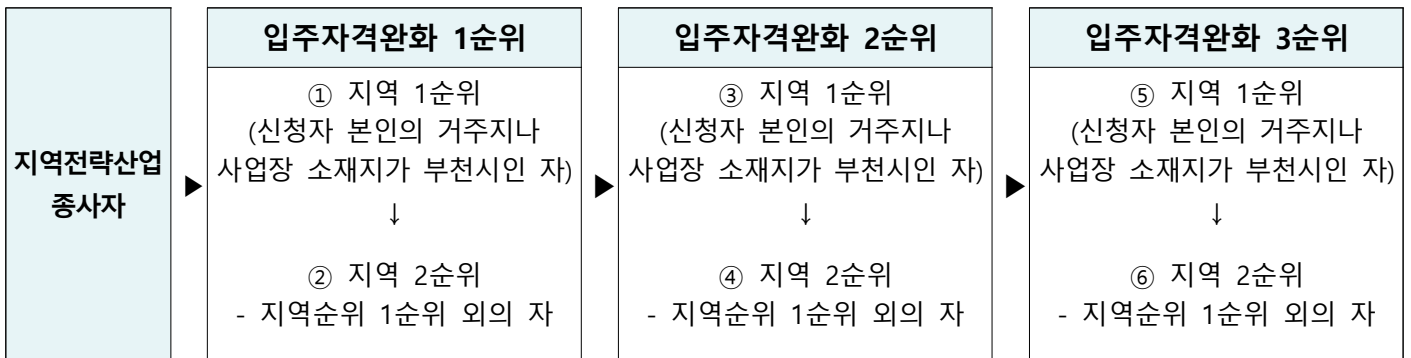
1) 입주자격 완화 순위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일 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20% 이하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일 반) 1인 가구는 140% 이하, 2인 가구는 13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2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는 14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30% 이하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

2) 지역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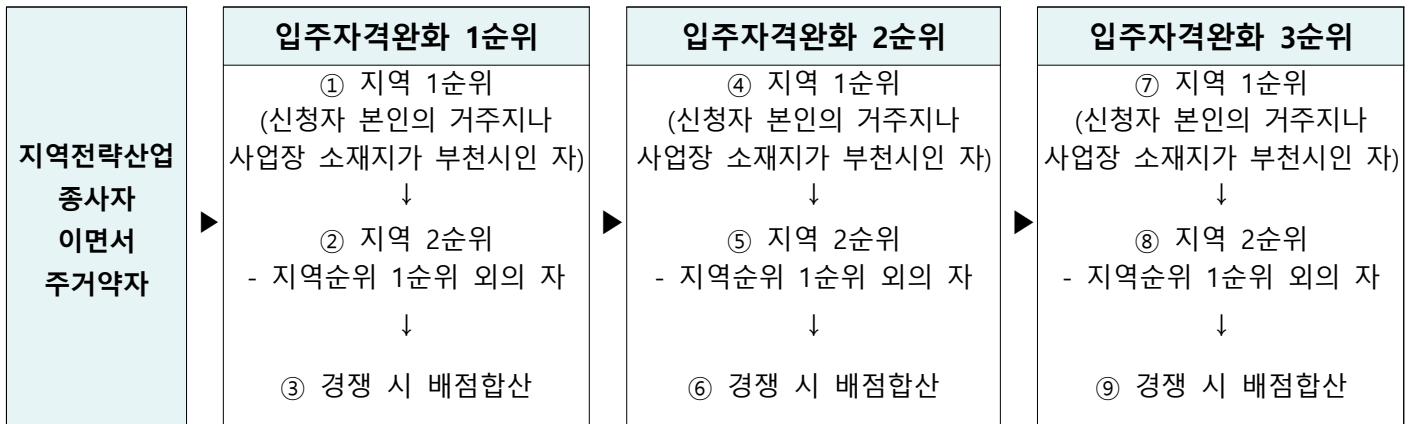
1순위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인 자
2순위	위 지역순위 1순위 외의 자

【일반주택 선정 순위】



- 위 표의 ① → ⑥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순위】



- 위 표의 ① → ⑨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 6. 28.(금))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기간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돌려드리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관련】

구 분	내 용
대상자 발표	'24. 8. 2.(금) 17:00 이후 - 대상자 조회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간	'24. 8. 5.(월) ~ '24. 8. 9.(금)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4. 8. 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영상 행복주택 담당자 (우 : 13637) -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 기재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택 : 아래 1) +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형) : 아래 1) + 2) + 3)에 해당하는 서류 • 부천시 추천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택 : 아래 1)에 해당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형) : 아래 1) + 3)에 해당하는 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 수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1통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통

구비서류	내 용	부 수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양식4)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확인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필수】 입주자격 완화 관련 확약서(양식5)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확약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부천시 에서의 '계속 거주기간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1통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에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2)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 분	해당 종사자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문화산업 종사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① 재직증명서	- 공고일 현재 재직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해당 직장
		②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보험 가입일부터 발급일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③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지역전략 산업 사업장의 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해당 직장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① 재직증명서	- 공고일 현재 재직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해당 직장
		②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보험 가입일부터 발급일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③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공고일 현재 종사중인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해당 직장

구분	해당 종사자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등록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부천시 추천자’의 자격관련 서류는 청약신청 시 부천시로 제출하여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 7. 1. 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서 · '12. 7. 1. 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서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4. 11. 29.(금),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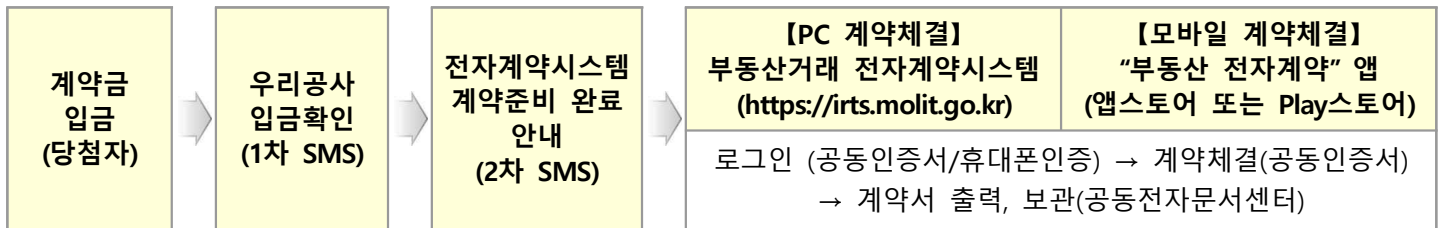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동·호를 배정받으셔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미신청·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미임대 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안내 [계약기간 : '24. 12. 10.(화) 10:00 ~ 12. 12.(목) 17:00]

-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첨자 지위는 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일정 및 방문계약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첨자(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 접수 시 “SMS 수신동의” 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방문계약 (하루만 가능합니다.)

- 계약 일 : '24. 12. 10.(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1) 기본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 단,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 계약자 도장(단, 본인 방문 시에는 서명가능)
2)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 배우자 외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아래 ①, ② 중 하나 선택하여 준비 ① 인감증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의 인감도장 ② 자필서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8.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콜센터 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LH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 목적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인해 신청자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2. 30.에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청약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청약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16 801 1477 1088"> <thead> <tr> <th data-bbox="316 801 603 846">구 분</th> <th data-bbox="603 801 1477 846">안 내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6 846 603 891">동의서 수집 사유</td> <td data-bbox="603 846 1477 89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td> </tr> <tr> <td data-bbox="316 891 603 936">동의서 서명 대상</td> <td data-bbox="603 891 1477 936">세대구성원 전원 서명</td> </tr> <tr> <td data-bbox="316 936 395 1048" rowspan="2">서명</td> <td data-bbox="395 936 1477 981">정보 제공 동의</td> </tr> <tr> <td data-bbox="395 981 1477 1048">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td> </tr> <tr> <td data-bbox="316 1048 603 1093">동의서 유효기간 등</td> <td data-bbox="603 1048 1477 1093">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사실 미통보'에 서명하셔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에 동의 시 신청자분께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계약 및 최대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세대는 6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10년입니다. 											
입주자 선정 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재청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계약 및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된 후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자격 및 갱신 임대조건	<p>【갱신계약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방법과 일정은 추후 갱신계약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 후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1회 재계약 허용 후 다음 회차 갱신시에 최초 종사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갱신계약은 불가하나, 종사자 자격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p>[갱신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09 521 1484 680">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자는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등록 및 주차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4년의 경우 3,708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은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이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이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세대분리했을 경우는 중복입주로 간주하여 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제출한 심사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신청자의 가입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주택에 신청하시거나 입주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해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해당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시 납부한 계약금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구 분	내 용
그 외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안(뇌병변장애안), 청각장애안 시각장애안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일보다 앞서 실입주하실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관계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9. 지구·단지 및 세대 내부여건

구 분	내 용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보도, 버스 환승차로, 변압기, 버스정류장, 지하철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주변시설물 및 구조물로 인한 소음,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행복주택 외 웹툰융합센터(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는 도심지역에 위치합니다. 이에 지구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단지여건	<p>【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구 동측은 18m도로, 서측은 24m도로 및 15층 공동주택단지, 남측은 18m도로, 북측은 20m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합니다. • 본 단지의 주변의 북측, 동측, 남측은 추후 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p>【단지 내부여건】</p> <p>①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층 남측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외에는 지상차량 출입이 불가합니다. • 야외 우수배관(재질 : 스테인레스)이 지상 1층 건물벽을 따라 바닥까지 노출됩니다. • 1층 상가를 포함한 시설물별 지상 출입구 및 각 동 사이 1층 지상 보행로에 배수 트랜치 및 시각 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됩니다. • 외부와 단지경계를 구분하는 별도의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단지는 지하 3층(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지하3층(지하주차장, 주택, 업무 시설), 지상1층~지상3층(부대시설, 판매시설, 지역편의시설), 지상4층~25층(주택 : 101동), 지상2층~25층(주택 : 102동) 행복주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붕은 전체 동에 평지붕으로 설치되었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 아파트 복도 외부 면으로 일부 창호가 설치되며, 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아파트의 101동, 102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중계기실에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위성안테나 및 헬리포트(102동), 전 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차도)가 없으며,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사집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사차량은 지하1층 차로만 통행 가능하며, 진입 후 지하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하여야 합니다. • 주차가능 차량수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웹툰융합센터 모두 합쳐 전체 518대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총 367대[지상1층 4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지하1층~3층 363대(장애인 주차 8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 총 4대[지상1층 4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 웹툰융합센터 : 총 147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 단지 내 자동차 출입구는 2개소(지상1개소, 지하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은 웹툰 융합센터용으로 147대, 아파트용으로 37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 관제시설이 설치 되어 웹툰융합센터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주택용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 완속충전기 3개소(지하1층) 설치되며, 스마트 충전기는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 공간 높이는 2.1m입니다.(단, 조업을 위한 지하1층 출입구 및 분리 수거장 조업차량 동선구간의 차로 높이 2.7m) • 특고압이 지하1층 주차장 천장을 횡단하여 지하3층 전기실로 인입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의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단지 배치 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취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은 1층에 배치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경비실은 101동 1개소, 102동 1개소로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101동, 102동과 웹툰융합센터는 2층에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수립될 운영계획(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며 공동시설과 관련된 집기류 및 운영비용 등은 LH에서 제공하거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보관소는 지상1층 주차장 램프 입구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거리가 먼 세대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웹툰동 지상1층 북측에 위치한 재활용보관소는 부천시(관련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1층에 폐기물 보관창고,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창고가 설치되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부천시 관련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이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입주민의 수요가 없는 경우 다른 용도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②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 침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지상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 또는 2층, 3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2동(근생4) 및 웹툰동(근생10) 인근에 상가시설 가스공급을 위한 유해시설(LPG시설)이 설치되오니 사전에 설치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3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지하저수조에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인입 개폐기(한국전력)는 웹툰동 북측과 101동 서측 사이 지상 1층에 배치되며, 주변은 조경 식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2동 2층, 3층 세대는 층고가 높아 타 층의 세대보다 천장고가 높을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 천장 설치로 인해 스프링클러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2층~3층 주민공동시설, 101동 지상2층~3층 지역편의시설, 102동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2층~3층 주민공동시설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 1층, 2층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되는 영업업종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시설 및 상가의 에어컨 설치(실외기 등)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층~3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 실외기에서 소음, 불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6A타입 세대 내부에는 세탁실 공간이 없습니다. 101동 2층에 공용세탁실이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A타입, 21A타입, 21T1/T2 타입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 세대는 101동의 4~14층(26A1형), 102동의 2~10층(26A1형, 26B1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관마루귀틀 단차는 30mm, 욕실입구 미서기문, 양변기 안전손잡이, 샤워기에는 접이식 의자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 세대의 해당 층 복도 벽체에는 주거약자용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6A, 36T, 44A 및 44B타입 세대의 복도에 면한 침실 창에는 방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외부에 면한 확장 및 비확장 발코니창의 하부는 입면 분할창이 설치되며, 상부에는 슬라이딩 창으로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세대 간 칸막이는 경량벽으로, 콘센트 등 전기·설비 배관 및 관련 마감재는 노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단위세대 발코니 PVC 입상배관(우수, 에어컨 배수)은 보의 간섭으로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19. 12. 31.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부 문	내 용	적용여부	비 고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미적용	해당없음(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분	수변전 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26A1/B1) 내 편의시설 설치

- 해당 세대의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주거약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에 입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내 설치가능한 편의시설 항목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 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부천영상 행복주택은 전 세대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없습니다. 이에 위 항목 중 '부엌의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조정'은 이 단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신청관련 안내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세부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향후 계약체결 시 안내드리는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방법 : 계약 체결기간 내 LH 공사 방문 또는 등기 발송
- 필요서류 : 설치 신청서(별도양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 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서

■ 설치가능한 편의시설 항목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 → 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각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대상 중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이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12.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부천영상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택가액은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소유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 12. 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내용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구 분		항 목	내 용	자료 출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구 분	항 목	내 용	자료 출처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 정보	

14. 소득 · 자산금액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총자산은 아래 식과 같이 산정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하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p>[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p>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또는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신청 시 확인합니다.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6.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부천시에서 검증**합니다.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는 청약신청자가 재직중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 업종이 아래 「콘텐츠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 10차(통계청-통계분류포털-경제-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코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검증 관련 문의 : 부천시 [032] 320-3000]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요약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1	출판산업	5	게임산업	9	캐릭터산업
2	만화산업	6	애니메이션 산업	10	지식정보산업
3	음악산업	7	방송산업	11	콘텐츠솔루션산업
4	영화산업	8	광고산업	12	공연산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및 세부 항목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항목	
1	출판산업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신문배달판매)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서점(만화제외)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적 임대업(만화제외)	76291	서적 임대업
		2	만화산업	
만화 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58112			만화 출판업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58112			만화 출판업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CP)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76291	서적 임대업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76291	서적 임대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	음악산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음반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음반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음반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음원 대리 중개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90191	공연 기획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4	영화산업		
	영화 기획 및 제작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수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제작 지원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극장 상영	59141	영화관 운영업
	영화 홍보 및 마케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투자 조합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DVD/VHS 제작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DVD/VHS 도매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DVD/VHS 소매(온라인 포함)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DVD/VHS 대여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DVD/VHS 상영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 상영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	게임산업		
	게임 기획 및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배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게임기 도소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게임기 임대업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업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홍보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인터넷, 모바일)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방송산업		
	지상파 방송사업자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전광판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인터넷방송영상물 서비스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인터넷 TV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인터넷프로토콜TV(IPTV)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방송영상물 중개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송영상물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94110	산업 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	광고산업		
	광고대행·매체대행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기획·전략대행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CM·영상·카피·그래픽 제작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온라인 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광고사진 스튜디오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CI(Commercial Identity) 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마케팅·리서치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PR(Public Relations)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SP(Sales Promotion)	71310	광고 대행업
	이벤트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간 디자인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인쇄	1811	인쇄업
	제판	18121	제판 및 조판업
	광고대행	71310	광고 대행업
	매체대행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기획·전략대행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물 기획·편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기타(장비취급 등)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9	캐릭터산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캐릭터상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캐릭터상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인터넷 및 모바일 캐릭터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10	지식정보산업		
	e-learning 기획업	58222 620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63991 620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63991 620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58222 620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58222 620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91136	골프 연습장 운영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58222 620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스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11	콘텐츠솔루션산업		
	저작물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타 콘텐츠 솔루션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12	공연산업		
	공연기획 및 제작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매니저업	73901	매니저업

17.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신공영(주) [114-81-04605] • 이수건설(주)[206-81-40054] • 주식회사 삼흥전력[417-81-05901] • (주)이든정보통신[128-81-71030] 	-	(주)상우엔지니어링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공고관련 문의	부천시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및 '부천시 추천자' 문의	
	LH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1670-0003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청약 방 문	'부천시 추천자' 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부천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 / 모바일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의 '소통 · 신고' 내 부패 · 부조리 신고의 「부조리 · 갑질 · 전관유착 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8.(금)

